|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 소규모 저이익기업**  **기업소득세 예납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14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소규모 저이익 기업의 소득세 우대정책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2011]1117호) 유관규정을 관철 실행하기 위해 소규모 저이익기업 기업소득세 예납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직전 납세연도 연도 소득세 과세표준이 6만 RMB(6만RMB 포함)보다 낮고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2조 규정의 자산 및 취업인원 수 표준을 만족하며, 실제 이윤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소규모 저이익기업(이하 ‘조건 부합 소규모 저이익이업’)은 기업소득세 예납신고 시, 《<기업소득세 월(분기)예납 납세신고서> 등 신고서 발표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1]64호)의 기업소득세 월(분기) 예납납세 신고서(A류) 제9행 “실제 이윤총액”과 15%의 곱을 제12행 “감면소득세액” 내에 임시로 기록한다.  2. 조건 부합 소규모 저이익기업의 “취업인원수”, “자산총액”의 계산표준은 《소규모 저이익기업 소득세 예납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08]251호)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조건 부합 소규모 저이익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예납신고할 때에는 반드시 주관 세무기관에 직전 납세연도 소규모 저이익 기업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이 기업이 제공한 관련 증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기업의 직전 납세영도가 규정조건에 불부합된다고 인정한 경우, 본 공고 제1조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보고할 수 없다.  4. 납세연도 종료 후, 주관 세무기관은 반드시 기업 납세연도의 소규모 저이익기업의 규정조건 부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나, 이미 본 공고 제1조 규정에 따라 감면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예납한 경우, 연도 확정신고 납부 시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보충납부 해야 한다.  본 공고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4월 13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小型微利企业预缴企业所得税有关**  **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14号  　　为贯彻落实《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有关问题的通知》（财税〔2011〕117号）有关规定，现就小型微利企业预缴企业所得税有关问题公告如下：  　　一、上一纳税年度年应纳税所得额低于6万元（含6万元），同时符合《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第九十二条规定的资产和从业人数标准，实行按实际利润额预缴企业所得税的小型微利企业（以下称符合条件的小型微利企业），在预缴申报企业所得税时，将《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月（季）度预缴纳税申报表〉等报表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1〕64号）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月（季）度预缴纳税申报表（A类）第9行“实际利润总额”与15%的乘积，暂填入第12行“减免所得税额”内。  　　二、符合条件的小型微利企业“从业人数”、“资产总额”的计算标准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预缴问题的通知》（国税函〔2008〕251号）第二条规定执行。  　　三、符合条件的小型微利企业在预缴申报企业所得税时，须向主管税务机关提供上一纳税年度符合小型微利企业条件的相关证明材料。主管税务机关对企业提供的相关证明材料核实后，认定企业上一纳税年度不符合规定条件的，不得按本公告第一条规定填报纳税申报表。  　　四、纳税年度终了后，主管税务机关应核实企业纳税年度是否符合上述小型微利企业规定条件。不符合规定条件、已按本公告第一条规定计算减免企业所得税预缴的，在年度汇算清缴时要按照规定补缴企业所得税。  　　本公告自2012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二○一二年四月十三日 |